

## □ 관련규정

- 「□□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」 제6조 [별표1]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 기준에는 각종 계약의 체결시 공사도급,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.5%, 물품구매, 수리, 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.5%(1건당 5,000원 미만의 단수 절사, 5,000원 단위로 계산)로 매입해야 함
- 일반운영비,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신용카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물품의 구매계약은 매입 면제하여야 함

※ 각 시·도별 지역개발기금 조례 별도 제정 및 운영중으로 세부 기준은 상이함

## □ 지적사항

사례1>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면서 대금청구액 1.5%에 해당하는 공채 매입을 누락

사례2> 물품 계약을 진행하면서 건별 공채를 과다 징구

사례3> 계약대금을 지급하면서 채권 과소 징구

사례4> 신용카드 대금 지급 시에는 공채 매입 면제 대상임에도 방역 물품에 대한 공채 징구

## 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공사·용역·물품 구매 등 계약 시 해당 시·도 조례에 규정된 채권 매입 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여 집행할 것